

소개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스위스 바젤주—

이 우 이 <본 협회 기획조정실 과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제7조), 「산림법」(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損害保險과 市場」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 전부터 26개 주(州) 중 19개 주에

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보도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州)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주(州)도 보험 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 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 (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물보험법

바젤주 의회는 주정부의 제안에 따라 아래의 법률을 심의 공포한다.

I. 바젤주의 건물보험

제1조 이하에서 건물보험소로 지칭되는 “바젤주 건물보험소”는 바젤시에 소재를 두는 독립적인 공법상의 법인이다. 건물보험은 재산에 한정된다. 재원(財源)은 그 사업목적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제2조 (조직) 건물보험소의 기구는 아래와 같다.

A) 행정위원회

B) 집행부

C) 감독처

주정부가 건물보험소를 감독한다. 주정부는 각 기구에 부여할 권한을 확정하며, 업무를 수행할 행정위원회와 감독처를 구성한다. 주정부는 매년 건물보험소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주의회에 보고한다.

II. 의무보험

제3조(의무보험) 바젤주의 모든 건물은 제17조와 제18조에 명기된 위험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보험소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밖에 다른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건물보험소는 특히 심각한 손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대상의 경우 전체위험 또는 개별적인 위험에 대해 보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4조(보험의 시작과 소멸) 신축건물과 크게 증축하는 건물은 건축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규모로 증축하는 건물은 건축작업의 종료와 함께 보험가입 의무가 시작된다. 신축건물과 건물의 가치를 높여 증축한 건물의 소유주는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을 철거했거나 전손(全損)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이 소멸된다.

III. 보험가액

제5조(원칙) 건물은 신축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가치저하가 50%를 넘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만 유효한 보험에 가입한다. 소유주는 신축가액으로 별도의 추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보험은 불법으로 신청된 경우 건물보험소는 이를 거절한다.

제6조(예외) 그러나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건물보험소는 일정기간만 유효한 보험 또는 그에 적절한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제7조(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가액의 산정에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상업 관례상의 건축비가 기초가 된다. 건물의 보험가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유주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제8조(건축비의 변동) 건물보험소는 매년 보험가액을 변동된 건축비에 맞춘다.

IV. 재정

제9조(보험료) 주정부는 모든 건물을 위험등급에 따라 나눈다. 주정부가 보험요율을 정한다. 보험료는 손해를 보상하고, 적립금(16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손해방지와 피해복구(33조)를 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가액에 따라 정수된다.

제10조(일부보험) 보험이 1년의 일부만 지속된다면, 보험료는 이 기간만을 위해 납부되어진다. 시작된 달은 해당기간의 끝까지 완전히 계산한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년도에는 보험료 부담이 면제된다.

제11조(제외) 3조에 의거 건물의 일부를 보험에서 제외시킬 경우 보험료는 낮추어지지 않으며, 완전 제외된 경우에도 2년간은 그 금액 그대로 계속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위험(요소)의 변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소유주는 1개월 이내에 건물보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주가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으면 건물보험소는 그 당해년도와 최고 지난 5년동안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청구한다. 그 위험이 낮아졌을 때의 보험료는 소유주가 건물보험소에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부터 정정된다.

제13조(보험료의 납부와 보장) 보험료는 토지의 소유주, 즉 보험료 계산서가 교부된 날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주가 납부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는 공공연한 법적 기초 조세로 보장받는다.(민법 시행령 188조) 건물의 취득자는 미납된 보험료를 책임진다.

제14조(법적전개) 보험료의 결정은 1889년 4월 11일의 강제집행과 과산에 관한 연방법 8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판결과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다.

V. 재보험과 적립금

제15조 건물보험소는 재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 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적립금) 건물보험소는 적당한 적립금을 적정히 늘리고 유지하여야 한다.

VI. 담보범위

제17조(화재보험) 건물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보된다.

- A) 불, 연기 또는 열
 - B) 낙뢰
 - C) 폭발
 - D) 비행체나 이의 부분이 추락함으로 인한 피해
- 지급되지 않는 경우
- A) 불, 연기 또는 열을 규정에 맞게 사용했음에도 마모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

B) 원심기의 파손 또는 다른 동력기의 작동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

제18조(자연피해에 대한 보험) 건물은 아래의 피해에 대해 담보된다.

- A) 폭풍
 - B) 우박
 - C) 홍수와 범람
 - D) 설압과 눈사태
 - E) (흙)사태
- 아래의 피해는 자연피해가 아니므로 변상되지 않는다.
- A) 그 강도가 이상이 아닐 때
 - B) 지속되는 영향. 예를 들어 습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

C) 피해가 예상되었던 경우 그리고 적기에 노력하여 대책을 강구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하자 있는 작업, 흡결있는 설계, 부적합한 재료, 흠 있는 건물 유지로 인한 피해

제19조(제외) 원자핵구조의 변화, 지진, 인공저수지, 초음속 폭음, 군(軍) 또는 민간보호기구의 대책 또는 연습, 모든 형태의 소요, 전쟁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담보되지 않는다.

VII. 보험금 지급

제20조(보험금의 산정) 신축가액으로 보험을 든 건물이 전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건물보험소가 복구비용을 보상한다.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2년간 변동된 건축비를 고려한다.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최고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증축건물을 소유주가 건물보험소에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정기간만 유효한 보험에 든 건물은 완전피해와 복구시 보험금지급이 이 가액으로 한정된다. 다른 보험가액이 약정되었다면(6조) 완전피해 시 보상액은 그 금액을 넘지 못한다. 부분피해인 경우는 등급에 따라 1급~4급까지로 구분된다. 23조에 따른 부가금 지급은 별도로 꼭 보상

된다.

제21조(완성되지 않은 건물)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피해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건물의 부분의 가치에 한해 보상한다. 단 그 건물의 부분이 보험 가액의 산정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철거대상) 철거하기로 지정되었거나 붕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은 후에 다시 지어진다 하더라도 철거가격으로만 보상된다. 부분피해일 때 건물보험은 응급 복구비용을 보상하지만, 철거가격이 하의 비용이다.

제23조(부대비용 지급) 건물보험소는 보험사고로 직접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대해 그 비용을 보상한다.

A) 파괴된 건물부분의 철거

B) 기존의 일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작업과 이에 따른 방지책. 이런 방지책이 잔여 건물을 보호하는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건물보험소는 인명구조를 위해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한다.

C) 피해를 복구할 때 보험에 든 기타의 건물, 나무, 경작물, 울타리 등에 발생한 피해

제24조(미복구) 피해가 발생한 지 4년이내에 건물이 다시 지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 보상된다. 그 액수는 복구 시의 보상을 넘지 못한다. 이유있는 경우 건물보험소에는 개축기간을 알맞게, 앞으로 최고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25조(보상받을 권리의 상실 또는

보상의 삐감) 소유주가 고의로 피해를 유발했다면 32조에 따라 보상청구가 유보된다. 소유주의 중과실로 손해가 유발되었으면 건물 보험소는 소유주의 과실에 상응하게 보상을 삐감할 수 있다.

제26조(상환청구) 제3자가 손해에 책임이 있고, 건물보험소가 보상을 한 경우에 소유주의 배상청구권은 건물보험소로 이전된다. 건물보험소는 채권법의 규정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건물보험소의 이 권리 를 침해한 소유주는 자신의 행위 또는 태만(부작위)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VIII. 피해시 절차

제27조~31조 : 법 조문 생략

IX. 토지저당권자의 권리

제32조~33조 : 법 조문 생략

XI. 법률상의 수단

제34조 : 법 조문 생략

XII. 결의 규정과 잠정 규정

제35조~38조 : 법 조문 생략